

전기용품안전인증 Q & A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 <편집자주>

Q 안전인증표시 사항 중 A/S 연락처의 표시 규정(20조 6장 별표3)에 대해 문의합니다.

질문은 해외제품으로 A/S 연락처가 달라질때 바꾸어 표시 가능한지요? 이는 수입품으로 수입판매사, A/S 업자가 일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.

즉, 외국에서 수입 할때, 국내 판매자(A/S 가능한 업자)가 양사간의 계약에 따라 바뀌는 경우, 또 업자의 도산으로 부득이 A/S사를 바꿔야하는 경우, 혹은 A/S 업자가 복수가 될 경우 등, A/S 연락처가 일정하지 않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.

이때, 아래가 가능한지요?

1. 기재사항 분리 : 수입 전에 인증 표시 사항 중 아프트 서비스 연락처 외 표시를 하고 아프트 연락처는 수입 후 추가기입.
2. 아프트 업자의 중계 : 해외제조사의 국내 지사연락처를 임시로 표시하고, 실질 아프트서비스 업자를 지사에서 중계하는 것.

A 우전기용품의 안전인증표시는 반드시 출고전(통관전)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통관후에 A/S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A/S가 가능하도록 표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, 기타의 표시는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※ 참고 :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는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물을 묻힌 형질으로 15초간, 석유계통의 용제를 묻힌 형질으로 15초간 문 질렀을 때 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.

Q 자율안전 마크인쇄에 관한 질문입니다.

자율안전검사를 의뢰해 인증을 받은 후 제품에 안전마크를 인쇄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저촉되어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.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A 귀하가 문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(수입)자는 공인시험·검사기관에 안전성 시험을 한 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상기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“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”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